
2023 덕은한강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
설치 운영 계획

학생생활부

2023. 3.

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□ 설치 근거

-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제25조
-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
-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조례
-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-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~69조

□ 설치 목적

- 학교내 학교폭력 및 시설 안전 화재 예방
-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통한 학교 시설 보호 및 학교 구성원의 교육활동 안전망 구축

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- 담당부서 : 학생생활부, 교육행정실
- 책임관 : 학교장 (031-994-6902)
- 운영담당자 : 학생생활부담당자 (031-994-6935) 행정실 담당주무관 (031-994-6903)
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	주간 (근무시간)	학생생활부담당자 : 031-994-6935
	근무외 시간	당직자 : 031-994-6909

3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- 설치 대수 : 47대
- 설치 장소: 안전생활 취약지역(출입구, 사각지역, 중요지역 등)
- 카메라 설치·운영 현황

카메라 번호	설치 위치		수량	성능 (녹화)	촬영범위	촬영시간	보관 기간
	층	세부 위치					
1	1층	중앙현관	1	200만화소이상	중앙현관 앞	24시간	30일
2	1층	시청각실 외곽	1	200만화소이상	운동장	24시간	30일
3	1층	식생활교육실 입구	1	200만화소이상	교문 입구	24시간	30일
4	1층	식생활교육실 주방 입구	1	200만화소이상	주차장	24시간	30일
5	1층	식생활교육실 주방 외곽	1	200만화소이상	주차장	24시간	30일
6	1층	식생활교육실 북쪽 입문	1	200만화소이상	부출입문 앞	24시간	30일
7	1층	교사동 북쪽 출입문	1	200만화소이상	주차장	24시간	30일
8	1층	교사동 북쪽 외곽	1	200만화소이상	교사동 뒤	24시간	30일
9	1층	교사동 서쪽 외곽A	1	200만화소이상	교사동 뒤	24시간	30일
10	1층	교사동 서쪽 출입문A	1	200만화소이상	부출입문 앞	24시간	30일
11	1층	도서관 외곽 출입문	1	200만화소이상	부출입문 앞	24시간	30일
12	1층	중앙현관 동쪽 출입문	1	200만화소이상	부출입문 앞	24시간	30일
13	1층	교사동 서쪽 외곽B	1	200만화소이상	교사동 중앙	24시간	30일
14	1층	교사동 서쪽 출입문B	1	200만화소이상	부출입문 앞	24시간	30일
15	1층	교사동 남쪽 외곽	1	200만화소이상	운동장	24시간	30일
16	1층	교무실 중앙현관 복도	1	200만화소이상	중앙현관 앞	24시간	30일
17	1층	인쇄실 실내	1	200만화소이상	인쇄실 내	24시간	30일
18	1층	엘리베이터 실내	1	200만화소이상	엘리베이터 내	24시간	30일
19	1층	컴퓨터실 앞 복도	1	200만화소이상	1층 복도(서쪽)	24시간	30일
20	2층	교무실 I 복도	1	녹화	2층 교무실 복도(서쪽)	24시간	30일
21	2층	특수학급 앞 복도	1	200만화소이상	2층 복도(동쪽)	24시간	30일
22	2층	다목적강당 출입구	1	200만화소이상	다목적강당 출입	24시간	30일
23	2층	2층 사물함 A(중앙복도)	1	200만화소이상	사물함(북쪽)	24시간	30일
24	2층	2층 사물함 B(중앙복도)	1	200만화소이상	사물함(남쪽)	24시간	30일
25	2층	2층 중앙현관 외곽	1	200만화소이상	2층 중앙현관 출입	24시간	30일
26	3층	2~3층 중앙 계단	1	200만화소이상	3층 하단 계단	24시간	30일
27	3층	2~3층 북쪽 계단	1	녹화	3층 하단 계단	24시간	30일
28	3층	2~3층 서쪽 계단	1	200만화소이상	3층 하단 계단	24시간	30일
29	3층	2~3층 남쪽 계단	1	200만화소이상	3층 하단 계단	24시간	30일
30	3층	3층 생태환경교육실 복도	1	200만화소이상	3층 복도(남쪽)	24시간	30일
31	3층	3층 융합과학실 II 복도	1	200만화소이상	3층 복도(북쪽)	24시간	30일
32	4층	4층 중앙복도	1	200만화소이상	4층 복도(남쪽)	24시간	30일
33	4층	4층 영어교육실 복도	1	200만화소이상	4층 복도(북쪽)	24시간	30일
34	옥탑	옥탑 계단	1	녹화	옥탑 하단 계단	24시간	30일
35	지하	기계실 내부	1	녹화	기계실 내	24시간	30일
36	1층	서쪽 야외	1	녹화	서쪽 출입구 앞	24시간	30일
37	2층	북쪽 복도	1	녹화	서쪽 계단 방향	24시간	30일
38	3층	남쪽 복도	1	녹화	중앙 복도 방향	24시간	30일
39	3층	홀베이스	1	200만화소이상	중앙복도(운동장)	24시간	30일
40	3층	홀베이스	1	200만화소이상	사물함	24시간	30일
41	3층	홀베이스	1	녹화	사물함	24시간	30일
42	3층	홀베이스	1	녹화	중앙복도(주차장)	24시간	30일
43	4층	남쪽 복도	1	녹화	중앙복도 방향	24시간	30일
44	4층	홀베이스	1	녹화	중앙복도(주차장)	24시간	30일
45	4층	홀베이스	1	녹화	사물함	24시간	30일
46	4층	홀베이스	1	200만화소이상	사물함	24시간	30일
47	4층	홀베이스	1	200만화소이상	중앙복도(운동장)	24시간	30일
계			47		-	-	-

4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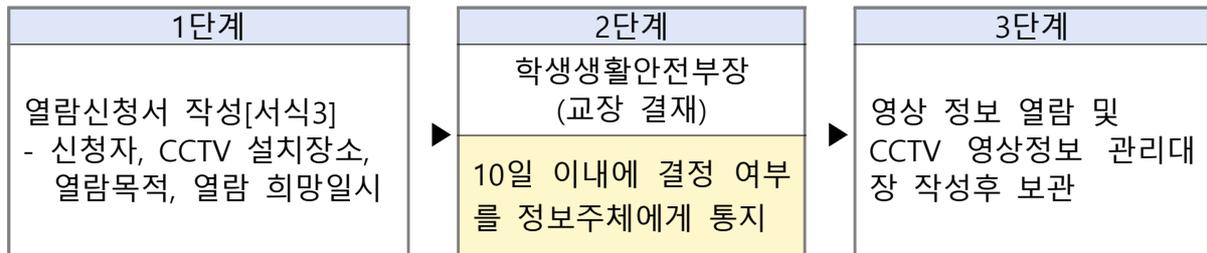
-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x 세로 40cm
- 안내판 내용: [서식1] 내용
- 부착장소 :

- | |
|------------------|
| 1. 학교 출입구 |
| 2. 교사(校舍) 출입구 |
| 3. 학교 주변 경계부(담장) |
| 4. 기타 교내 사각지역 등 |

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가.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: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 요청 할 수 있음

나. 절차 및 방법 :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



다. (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)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공개 및 열람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

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)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라.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**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** 있으며,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음.

6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-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(녹음기능 사용 안함) 24시간
-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30일
-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자동삭제
-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덕은한강중학교 전산기계실 컴퓨터 서버(통제구역)

7

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- 가. 열람·재생 권한자
 - 학교폭력 및 학생 생활에 따른 열람 및 재생: 교감, 학생생활부장
 - 시설관리로 인한 열람 및 재생: 행정실장
- 나. 개인영상정보 열람·재생 방법 및 장소
 - 열람·재생 방법 : 저장매체와 직접 연결된 화면에서 확인(온라인 기능 사용안함)
 - 장소 : 덕은한강중학교 당직실
- 다. 출입 통제현황 : 통제구역(관계자외 출입금지)

8

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
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- 가. 실시간 모니터링 권한자 : 교감, 학생생활부장, 야간 당직자
- 나. 실시간 모니터링 : 주간에는 학생생활부 담당교사, 야간에는 당직자가 수시로 모니터링

9

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는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.

-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⑦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0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

가. 접근 권한자 :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책임관, 운영담당자 및 주간 모니터링 담당자

나. 교육 : 학년 초 학교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실시

다. 내용 : 접근권한자, 시설 설치 및 관리 담당자,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에 대한 계획과 운영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및 영상 재생 등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교육

1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
가.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

- 개인영상정보를 저장·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하며,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

나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
- 해킹,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

다.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
-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 변경,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,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

라.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

-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

마. 접속기록의 보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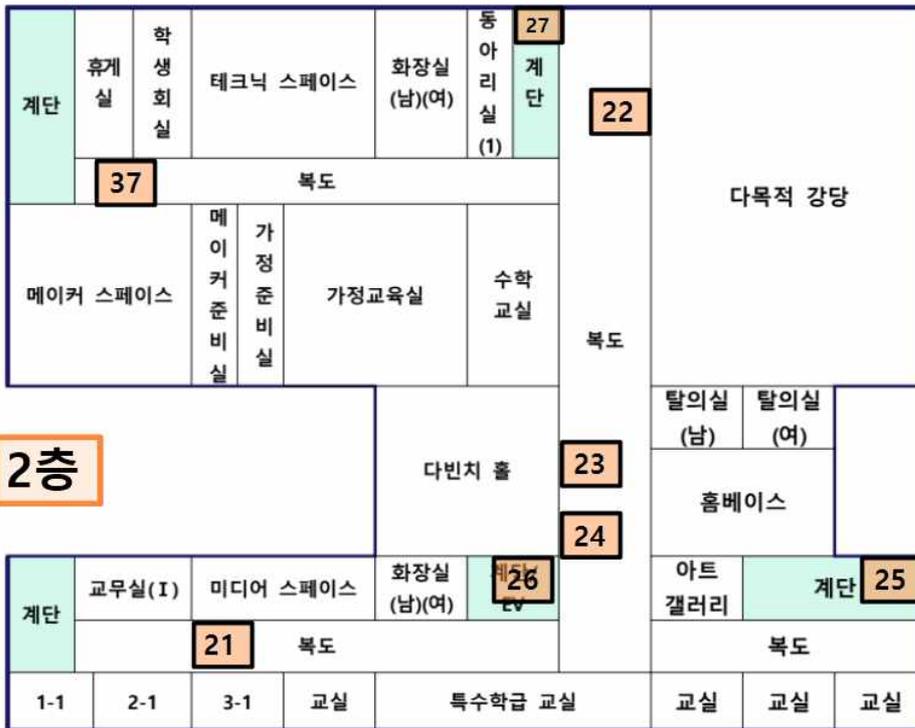
-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

11 학교 내 CCTV설치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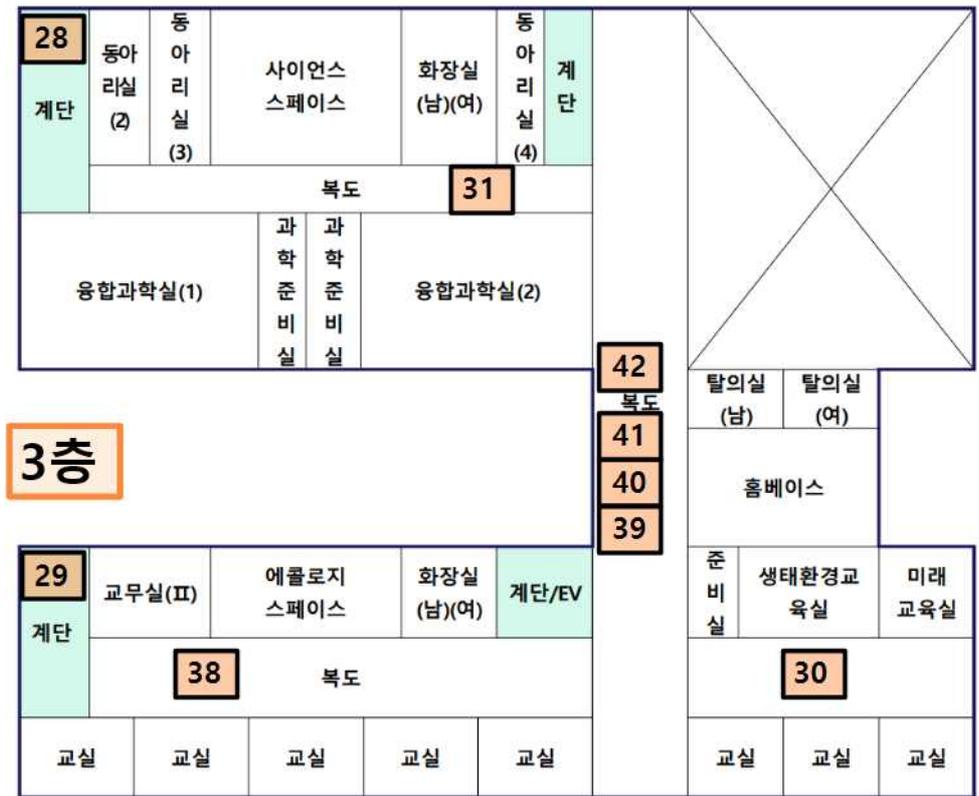
가. 1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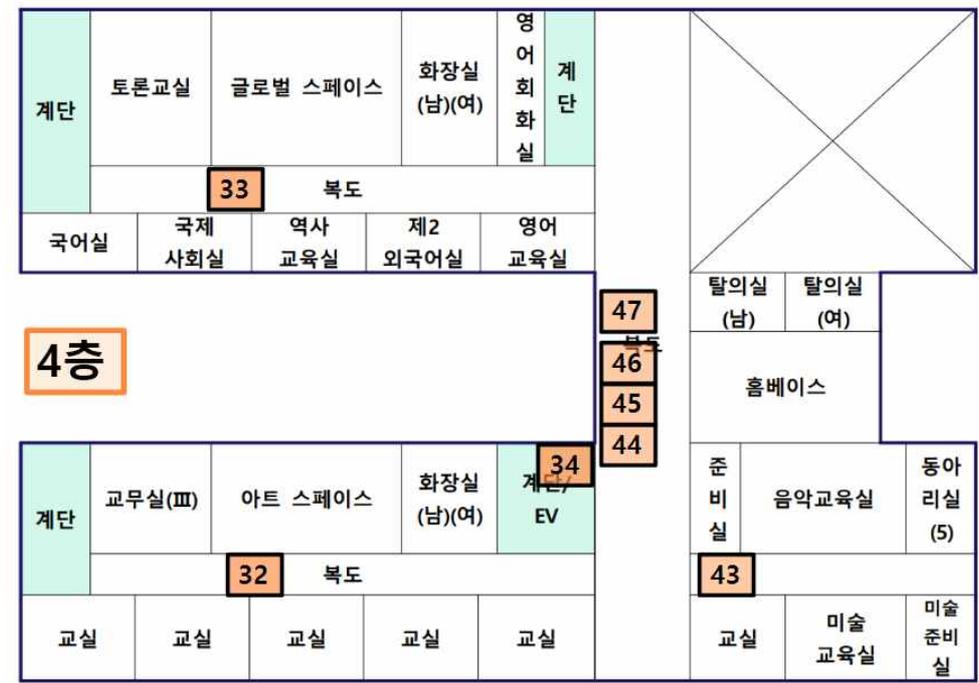
나. 2층



다. 3층



라. 4층



《서식1》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

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· 운영 안내

□ 설치 목적

-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한다.

□ 촬영범위 및 시간

- 촬영범위 :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
-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
□ 담당부서·책임관·연락처

- 담당부서 : ○○과
- 책임관 : ○○○
- 연락처 : 000-0000-0000

덕은한강중학교장

※ 안내판 규격 : 가로 30cm × 세로 40cm

- 정보주체의 식별이 용이한 수준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규격 변경이 가능함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

점검일자		점검자	(인)	확인자	(인)
------	--	-----	-----	-----	-----

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

녹화기 모델명		영상정보 보유기간		카메라 대수		카메라 설치위치	
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	--	-----------	--	-------------	--

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

구 분	점 검 내 용	점검결과	비고
가. 녹화기 (DVR) 관련	◦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?		
	◦ 녹화기(DVR)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?		
	◦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?		
	◦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?		
나. 모니터 관련	◦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?		
	◦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, 학부모, 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?		
	◦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? -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		
다. 카메라 관련	◦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? -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		
	◦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?		
	◦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? -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		
	◦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? - 교문,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		
	◦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? - 교실, 화장실, 탈의실, 목욕실 등 설치 금지		
	◦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? - 렌즈의 이물질, 주변 나무, 역광 등		
	◦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? - 녹음기능 사용 불가		
	◦ 카메라, 녹화기기,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?		
라. 설비 관련	◦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?		
	◦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? - 훼손 유무,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		
마. 보안 관련	◦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, 처리되는 영상정보의 접근권을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?		
	◦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, 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?		
바. 기타 의견			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

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과 외부인 무단출입 단속을 위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·관리를 통한 학생의 안전대책 마련

세부업무명

관련근거 및 주요내용

학교내 CCTV 설치

관련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~제25조 ◦ 초·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◦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·운영 조례 ◦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◦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6~69조
주요내용	<p>① 설치 기본 고려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설치사양: 200만화소 이상 권장 ▶ 설치장소: 안전생활 취약지역(출입구, 사각지역, 중요지역 등) <p>② 사전 의견수렴(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외부 공간(운동장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대상 사전의견수렴 생략 가능 ▶ 실내 공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CCTV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의견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- 특정실(교실, 식당, 강당, 실험실 등)의 경우 매년 사용 대상자가 전원 동의하는 경우에만 운영 <p>[참고] 국가인권위원회「교실내 CCTV 설치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」(2012.2.23.)</p> <p>‘교실 내 CCTV 설치행위는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, 학생들의 행동자유권,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’</p> <p>③ 설치·운영 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 게시(필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설치 목적,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, 카메라 대수, 위치 등 <p>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(필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재사항: 설치 목적 및 장소, 촬영범위 및 시간,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 교문 또는 교문인접 필수 설치</p>

CCTV 운영

관련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0조~제76조 ◦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표준 가이드라인
주요내용	<p>① 설치·운영 점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[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]에 따라 주·적 점검 실시 (월별 또는 분기별) ▶ CCTV 업무 관련자(책임관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전담자 등)에 대해 제반 교육 실시 <p>② 영상정보 열람 청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인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(영상정보)의 열람 청구 가능 ▶ 열람 청구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여부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▶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·관리 ▶ 개인영상정보 제3자 제공 제한 :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거나,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제3자에게 제공가능 <p>③ 영상정보 보유기간: 최소 30일 이상</p>